

### 3. 비과세 대상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council 정부가 비과세 대상 주택이 아니라고 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납세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council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council 정부는 2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2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 VII. 장애자에 대한 감면

### 1. 감면 대상

아래와 같은 장애자용 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council tax가 경감된다.

1) 화장실, 부엌을 제외한 장애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 예를 들면, 장애자용 휠체어 등을 보관하는 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장애자를 위한 욕실 또는 부엌

3) 휠체어 사용을 위한 주택내의 추가 공간

감면 대상이 되는 방은 장애자를 위해 특별히 건축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애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다.

### 2. 감면 내용

council tax는 평가 가액이 가장 낮은 A부터 가장 높은 H까지 8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장애자 경감 대상 주택은 실제보다 1등급이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D등급(band D)에 속하면 실제 과세시에는 C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 3. 감면 대상의 파악

council 정부는 감면신청서를 가정으로 송부한다. 장애자를 가진 가정에서는 council 정부에 그 서식에 의하여 장애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예를 들면, 의사, 직업 치료사 등이 그 장애인이 별도로 주택내에서 공간이 필요한 자임을 입증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 4.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구제